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33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5가합563527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R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승수, 박지환

피 고 1. 황AA

2. 대한법무사협회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효열

변 론 종 결 2016. 6. 9.

판 결 선 고 2016. 7. 14.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3,816,4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황AA은 2015. 7.

31.부터, 피고 대한법무사협회는 2015. 10. 22.부터 각 2016. 7.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1) 피고 황AA은 387,632,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대한법무사협회는 피고 황AA과 공동하여 위 돈 중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5. 2. 10. 대구 수성구 범어동 ○○○-○ 외 15필지 및 그 지상에 있는 호텔(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호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황AA은 법무사이고, 피고 대한법무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법무사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피고 협회는 법무사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소속 법무사의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하에 손해배상공제회를 두고 있다. 피고 황AA은 위 손해배상공제회의 회원이다.

3) 이CC은 2010. 10.경부터 2015. 5.경까지 피고 황AA의 사무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부동산 매수 등 과정

1) 원고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2015. 2.경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하나대투증권 주식회사, 이하 '하나금융투자'라 한다)에 금융자문 및 알선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위 대출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신탁회사에 담보신탁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5. 3. 4.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96,898,211,132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매수대금 중 600억 원 상당을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마련하였다.

3) 그런데 매수자금 대출 등 업무 처리 지연으로 잔금 지급 등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절차가 마무리 된 것은 2015. 3. 4. 15:00경이었다.

다. 피고 황AA에 대한 등기신청 업무 위임

1) 원고는 이CC을 통하여 피고 황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 등 등기신청 관련 업무를 위임하였다.

2) 이C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절차가 마무리 된 2015. 3. 4. 15:0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

3) 원고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주관한 하나금융투자의 담당자와 채권단의 담당자(이하 '하나금융투자 담당자 등'이라 한다)는 이CC에게 당일 이 사건 등기신청을 접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이CC은 이 사건 부동산의 관할등기소가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이므로 시간상 당일 등기신청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하나금융투자 담당자 등은 당일 등기신청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하였다. 이CC은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근처에 사무실이 있는 박DD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서만을 팩스로 보내 당일 접수하도록 하고, 등기원인서류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 담보신탁계약서 등 원본 서류의 제출과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는 2015. 3. 5. 제출하거나 납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4) 하나금융투자 담당자 등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이CC은 취득세 등의 납부가 1일 지연됨에 따라 미납부세액의 0.03%에 해당하는 약 150만 원 정도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CC의 설명을 들은 하나금융투자 담당자 등은 이CC이 제안한 방법에 동의하면서 당일 등기신청 접수를 진행하라고 하였다.

라. 이 사건 등기신청 접수 등

1) 이CC은 2015. 3. 4. 이 사건 등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박DD 법무사에게 팩스로 보냈고, 박DD 법무사가 팩스로 받은 이 사건 등기신청서를 당일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 접수하였다.

2) 이CC은 다음날인 2015. 3. 5. 원고로부터 피고 황AA 명의의 예금계좌로 4,502,117,250원을 송금 받아 그 중 4,457,777,700원¹⁾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으로 대구광

역시 수성구청에 신고·납부하였다. 이어서 이CC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담보신탁계약서 등 이 사건 등기원인서류를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5. 3. 4. 접수 제48104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등기국 같은 날 접수 제48105호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신탁등기가 각 마쳐졌다.

4) 원고는 2015. 3. 5. 피고 황AA에게 위임업무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마. 무신고가산세 부과 등

1)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2015. 6. 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이 사건 등기신청서를 접수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53조의4 및 제54조를 적용하여 무신고가산세 합계 388,970,150원[= 취득세 가산세 388,795,73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87,632,84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162,890원) + 지방교육세 가산세 116,280원 +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58,140원]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5. 6. 5. 대구광역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29. 불채택결정을 받았다.

3) 원고는 위 무신고가산세 부과 고지를 받고(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2015. 7. 31.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에 위 무신고가산세 합계 388,970,150원을 납부하였다.

바.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다.

■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

1) = 취득세 3,876,328,440원 + 농어촌특별세 193,816,420원 + 지방교육세 387,632,840원

(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등기·등록 시의 취득세 납부기한) 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까지는 등록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

■ 지방세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52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 법무사법

제26조(손해배상책임)

①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무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나 제67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7조(공제사업)

① 피고 협회는 제26조에 따른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 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 피고 협회 회칙

제8조(공제사업) 이회는 지방회소속회원의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시행한다. 공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손해배상공제규정으로 정한다.

■ 피고 협회 손해배상공제규정

제11조(공제금의 지급)

① 회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기금에서 위임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한다(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공제금의 지급액은 회원 1인당 1년간 2억 원을 한도로 한다(이하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정한, 이CC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황AA이 원고로부터 취득세 등 신고·납부 업무를 위임받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황AA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 업무를 위임받기 전인 2015. 2.경 이CC이 원고에게 보낸 수수료 내역에 '등록세대행 수수료'의 기재가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취득세 등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법무사가 등기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등기에 선행하여 이행되어야 하는 취득세 등 신고·납부 업무도 함께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이CC이 2015. 3. 5. 원고로부터 피고 황AA의 예금계좌로 취득세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 황AA은 법무사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등기신청 업무뿐만 아니라 그에 부수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업무까지 위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1) 피고 황AA의 책임

가) 법무사와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 신고·납부 업무를 맡긴 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법무사는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는 구체적인 위임사무 범위에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위임인인 의뢰인의 지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법무사는 의뢰받은 사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범위 안에서는 비록 별도의 위임이 없다고 하여도 의뢰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하며, 의뢰인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도 그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법무사는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지시를 변경하도록 조언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589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황AA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등기신청 업무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취득세 등 신고·납부 업무를 위임받았으므로, 피고 황AA의 사무원으로서 이행보조자인 이CC은 그 업무 처리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여 원고가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지 아니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

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등기신청서만을 먼저 접수하는 잘못을 저질러(이CC은 하나금융투자의 담당자 등으로부터 등기신청서만 접수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에 관한 문의를 받았음에도 고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약 150만 원 정도 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될 수 있다는 조언을 해 주었다),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황AA은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 황A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된 것은 2015. 3. 4. 15:00경으로 당일 이 사건 등기신청 접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음에도 우리은행 등 채권자들이 당일 이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6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한 후였기 때문에 당일 이 사건 등기신청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 채권자들의 반발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혹시 그 사이에 제3자의 등기신청 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고측이 거액의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될 수도 있는 등 당일에 등기신청서 접수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사정이 있어 원고측이 당일 접수를 강요하였고, 이러한 원고측의 요구에 따라 이CC이 취득세 등을 다음날 신고·납부하기로 하고 등기신청서만 먼저 접수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납부하게 된 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절대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황AA의 책임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투자금융 담당자 등 원고측이 2015. 3. 4.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채 등기신청서 접수만을 강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이CC, 김정한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하나금융투자의 담

당자 등은 이CC에게 최대한 2015. 3. 4. 당일 등기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되, 당일 접수가 불가능하면 다음날인 2015. 3. 5. 제일 먼저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라고 말한 사실,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등기신청서만 먼저 접수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황A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협회의 책임

가) 법무사법 제26조 제2항,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피고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는 그 회원인 법무사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임인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므로 법무사인 공제가입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위임인은 법무사와 피고 협회 사이에 체결된 공제계약에 따라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와 같은 지위에서 직접 피고 협회에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147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위와 같이 무신고가산세를 납부하게 된 것은 피고 황AA이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민법 제391조에 따라 피고 황AA의 이행보조자인 이CC의 고의·과실은 피고 황AA의 고의·과실로 간주된다) 위임인인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협회는 법무사법 제26조, 제67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협회 손해배상공제규정 제11조에 따라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책임의 제한

다만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황AA이 당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수 없었던 것은 이 사건 때

매계약 체결 완료가 늦어졌고, 관할등기소가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인데 매매관련 서류는 서울에서 교부받았기 때문에 통상의 절차를 거쳐 당일 등기신청서를 접수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점, 법무사법상 취득세 등 신고·납부 의무는 고유한 업무 범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점, 피고 황AA이 취득세 등 신고·납부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보수가 소액에 불과한 점, 원고측도 등기신청서만 먼저 접수할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사전에 과세관청에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황AA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황AA이 취득세 등 신고·납부 없이 2015. 3. 4. 이 사건 등기신청서만을 접수하고, 그 다음날인 2015. 3. 5.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관할 과세관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받은 것인 점, 그로 인하여 원고가 납부한 무신고가산세 388,970,150원 중 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387,632,840원인 점, 한편 이CC이 원고측에게 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약 150만 원 정도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려 주었던 점, 원고도 이 사건 청구로서 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 황AA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위 무신고가산세 중 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상당인 387,632,84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3,816,420원²⁾(= 387,632,840원 × 5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황AA은 원고가 가산세를 납부한 날인 2015.

2) 피고 협회의 공제금 한도인 2억 원의 범위 내

7. 31.부터, 피고 협회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2.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7.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 재판장 | 판사 | 정인숙 |
| | 판사 | 노미정 |
| | 판사 | 이지수 |